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96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서삼석·신영대·이병진

채현일 • 이원택 • 김동아

박수현 · 신정훈 · 문금주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

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

법률 제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를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과"로, "제28조에"를 "제46조에"로,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 제3조(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⑥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 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 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 양수 가액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46조 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기업도 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 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구 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 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7)・(8) (생 략)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 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 제28조에 따라 매립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 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은

개 정 아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 (7) · (8) (현행과 같음)
- ⑨ 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매 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 우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 양수 가액과-----제46조에-----매립지의 소유

매립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신 설>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 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 발구역의 지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 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기 제28조에 따라 매립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